

「구미시 영유아보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장난감도서관의 육아종합지원센터 통합 운영에 맞춰 시설별로 상이한 연회비 등의 면제 규정을 단일화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연회비 및 이용료 면제에 관한 사항(안 제14조)

1) 범위 확대 : (당초) 수급자 → (변경)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
2) 대상 추가 : (신설)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다문화가족

나. 용어, 문구, 상위법령 불부합 및 인용사항 정비

(안 제2조, 제8조~제10조, 제14조~제16조, 제18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영유아보육법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감사담당관, 정책기획과와 합의되었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장난감도서관의 육아종합지원센터 통합 운영에 맞춰 시설별로 상이한 연회비 등의 면제 규정을 단일화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‘영유아’의 범위를 수정하고, 자치법규의 최신 명칭과 인용 조항을 체계적으로 정비한 것은 적절한 조치이나 해당 상위법 내용이 개정된 지 약 3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조례 개정이 이루어진 것은 자치법규 현행화가 다소 지연되었다고 판단됨.
- 집행부서에서는 면제 대상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 시행일에 맞춰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적극적인 사전 홍보를 실시해야 하며, 다문화가족이 온라인상에서 증빙서류를 간편하게 제출하거나 자격 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디지털 시스템 접근성 개선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.
- 아울러 수혜 대상 확대에 따른 이용 수요 급증에 대비하여 보육 인프라의 질적 저하와 위생·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철저한 감독과 유기적인 소통 체계를 유지하여 내실 있게 운영·관리해야 할 것임.